

1. 개정이유

관능검사·서류검사에 한정하여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, 식용 소금의 품질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약처 고시)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능검사·서류검사에 한정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무소별로 관능검사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되, 검사시설 기준 적용에서 제외(안 별표2)
- 나. 식용 소금의 품질 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약처 고시) 개정 사항을 반영(안 별표3)
- 다.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품질검사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을 변경(안 별지제19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별표 2의 검사인력의 지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| |
|--|
| <p>사무소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6명 이상(관능검사 2명 이상, 분석검사 4명 이상) 보유하고 있을 것</p> <p>다만, 서류·관능검사에 한정한 품질검사기관은 사무소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능검사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농림·환경·식품·수산·화공 또는 이와 유사한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농림·환경·식품·수산·화공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소금의 품질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3. 소금의 품질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|
|--|

2. 별표 2의 검사시설의 지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| |
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검사실은 총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시험실, 전처리실, 기기분석실,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을 것2. 소금의 품질검사 및 분석 등에 필요한 다음의 장비를 1대(개)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가. 자동수은분석기나. 원자흡광광도계(AAS)다.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(ICP)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(ICP/MS)라. 액체크로마토그래프(HPLC)마. 전기로(최소 500℃ 이상 가열이 가능하고 바이메탈이 부착되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)바. 초순수제조기사. 화학천평(소수점 4자리 이상)아. 무균작업대(미생물용)자. 전자현미경차. 배양기(Incubator)카. 건조기타. 균질기(재료를 잘게 부수어 균일하게 만드는 기기) |
|---|

파. 회전증발농축기
 하. 이온크로마토그래프(IC)
 거. 가스크로마토그래프(GC)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/질량분석기(GC/MS)
 너.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약 전부를 보유할 것
 3. 다만,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품질검사기관은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
3. 별표 3 제3호나목1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항목		천일염	재제조소금	태움·용융소금	정제소금	기타소금	가공소금	검사방법	
염화나트륨 (%)		70.0 이상	88.0 이상	88.0 이상	95.0 이상 (해양심층수 염은 70.0이상)	70.0이상 (암염, 호수염은 88.0이상)	35.0 이상	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름	
수분 (%)		15.0 이하	9.0 이하	4.0 이하	4.0 이하 (해양심층수 염은 10.0이하)	9.0 이하	5.5 이하		
불용분 (%)		0.15이하 (토판염은 0.3이하)	0.02 이하	3.0 이하	0.02 이하	0.15 이하	-		
비소 (mg/kg)		0.5 이하							
납 (mg/kg)		2.0 이하							
카드뮴 (mg/kg)		0.5 이하							
수은 (mg/kg)		0.1 이하							
페로시아화 이온 (g/kg)		불검출	0.010 이하						
방사능 (Bq/kg,L)	¹³¹ I	100이하							
	¹³⁴ CS+ ¹³⁷ CS	100이하							

4.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회 사 명		
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 소		
소재지	본 사		
	(전화번호:)		
사무범위	사 업 장		
	(전화번호:)		
업무범위	[] 서류검사 [] 관능검사 [] 정밀검사		

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(법인만 제출합니다) 1부 2.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(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합니다)을 증명하는 서류 3.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 현황 1부 4. 품질검사에 관한 자체규정 1부	수수료 없음			
처리절차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해양수산부 (소금 담당부서)	→ 검토 (현장조사) 해양수산부 (소금 담당부서)	→ 결재 해양수산부 (소금 담당부서)	→ 지정서 작성 해양수산부 (소금 담당부서)	→ 지정서 발급 해양수산부 (소금 담당부서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